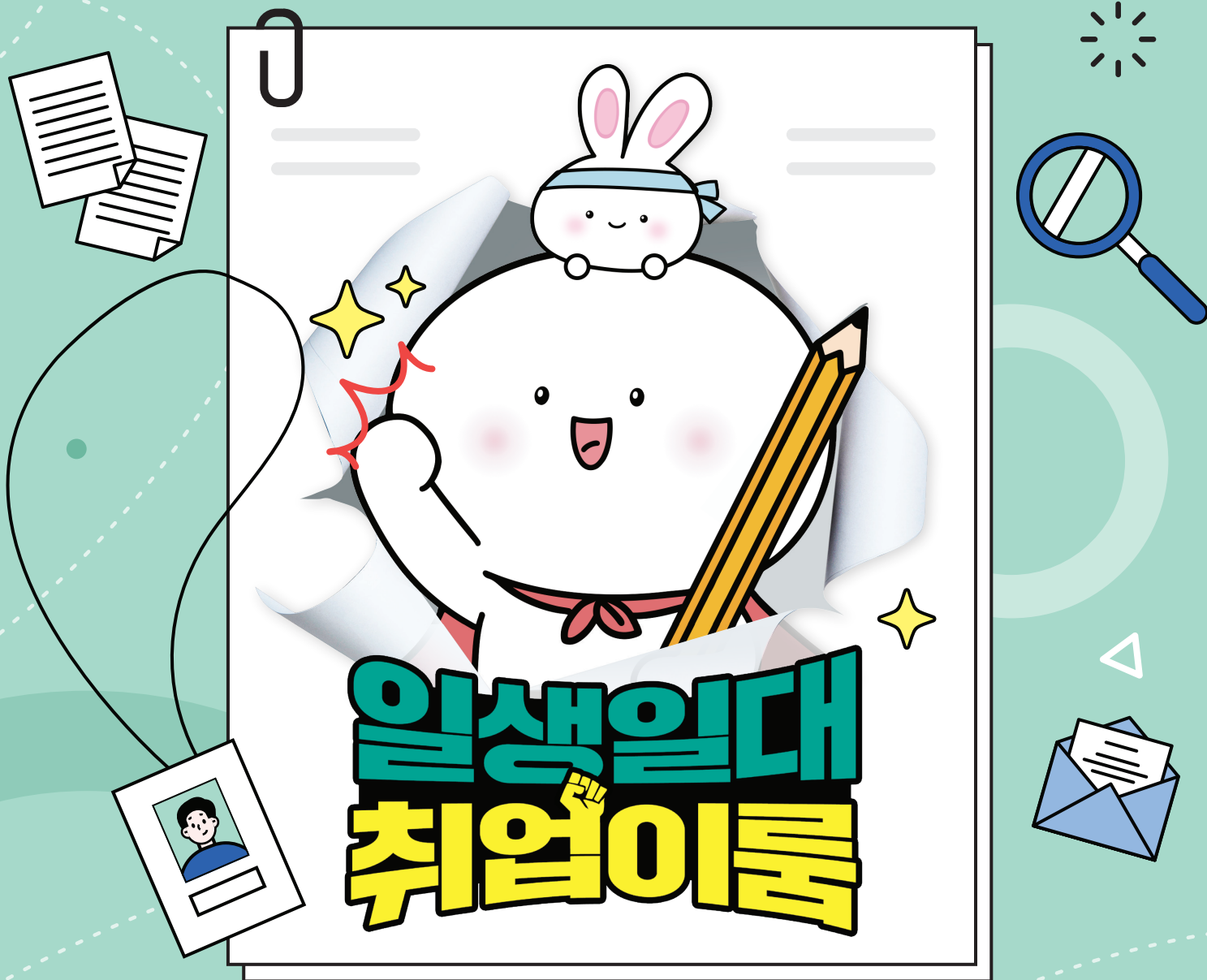


한국형 실업부조

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!



일생일대
취업이룸

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! 대국민의 취업이룸

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확인하세요! ▶

신청·접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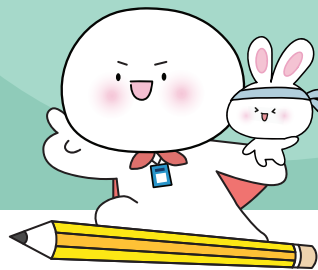
문의 고용센터 (국번없이) 1350

www.work24.go.kr

인스타그램(@moel.job.erum)

고용 24 홈페이지





I 지원서비스

구 분	유형	세부 지원내용			
취업지원 서비스	공통	✓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심리·취업·진로상담 ✓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✓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			
	I 유형	✓ (구직촉진수당) 월 50~90만원*, 6개월 지원 *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 1인당 10만원씩 추가 ✓ (조기취업성공수당)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(창)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%			
	II 유형	참여수당	훈련참여지원수당	참여장려수당	조기취업성공수당
생계지원		15~25만원(1회)	월 최대 28.4만원(6개월)	1회 2만원(3회)	조건부수급자 : 50만원
	공통	(취업성공수당) 6개월 근속시 50만원,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(총 150만원) * I·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, 특정계층(소득무관)			

I 참여요건

구 분	I 유형		II 유형		
연령	15~69세	청년 15~34세	특정계층 15~69세	청년 15~34세	중장년 35~69세
소득	중위소득 60% 이하	중위소득 120% 이하	무관		중위소득 100% 이하
재산	4억원 이하	5억원 이하	무관		

* (청년 15~34세)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

** (기본재산공제액) 서울시 9,900만원, 경기도 8,000만원, 광역시·세종·창원 7,700만원, 그 외 지역 5,300만원

◎ I 유형 참여제외 경우

- ✓ 생계급여수급자
- ✓ 실업급여·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✓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다만, '22년부터 직접일자리(노동시장이행형)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*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
- ✓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인 자

24년 중위소득

(단위 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
중위소득 60%	1,337,067	2,209,565	2,828,794	3,437,948	4,017,441
중위소득 100%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
중위소득 120%	2,674,134	4,419,131	5,657,588	6,875,896	8,034,882

*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▶ 가구의 범위 : 신청인 본인,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 (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)

신청·접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

www.work24.go.kr

문의 고용센터 (국번없이) 1350

인스타그램(@moel.job.erum)

고용 24 홈페이지

